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의2 (2006.4.28 신설, 2006.7.1일부터 시행)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3항의 개정으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개최의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등 해당의원에게 통지(안 제3조)
- 다. 윤리심사대상의원등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(안 제5조)
- 라. 윤리심사대상 의원 등은 필요한 증빙서류, 해명자료 등 제출(안제6조)
- 마.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50조의2,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의견

본 규정 제정안은 2006.4.28 「지방자치법」 개정과 이번 회기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의회 「윤리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함으로써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

- 특별위원회 구성과 출석요구 및 통고방법, 위원회 심사자격, 해당 위원의 소명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

- 기존 「징계특별위원회」와는 달리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직시 하였으며, 해당 심사대상위원의 징계방법 뿐 아니라 소명의 기회도 동시에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